

안녕하세요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.

2020. 4. 2. 부터 14일간의 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.  
2020. 4. 15.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 
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 사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○



중학교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'OO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(다만,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)

○



(사전)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(엄지손가락, V자 표시 등)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(퍼나르기) 하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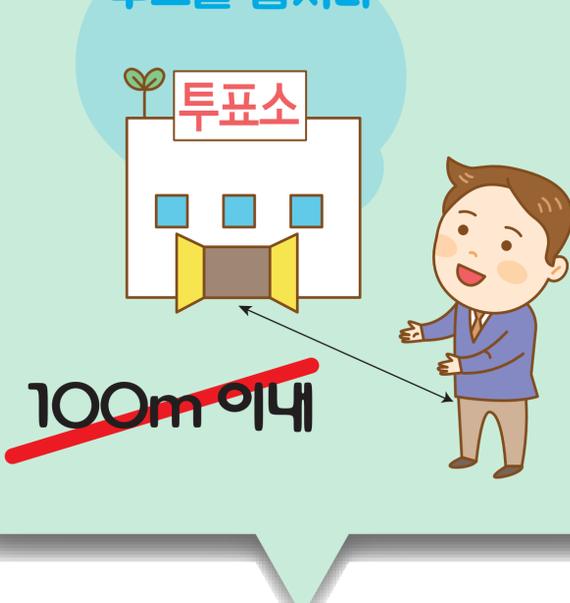
# 투표에 참여하자는 캠페인 활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함.  
다만, 아래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.

X



집집마다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

X



(사전)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

X



특정 정당 ·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행위

X



현수막, 인쇄물 등에 정당의 명칭, 후보자 성명, 사진 등을 나타내어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

X



선거일은 4. 15.(수)입니다.  
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,  
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 
학생증 또는 여권)을 꼭 챙겨 가도록 합니다.



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 
4. 10.(금) ~ 4. 11.(토)기간  
(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)에는  
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 
신분증만 지참하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